

Deloitte.

글로벌 최저한세 주제

제1회: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2024년 9월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전환기간동안 책임면제)

소개 및 개요

- 2023년 11월 29일에 베트남 국회는 글로벌세원잠식방지 규정("GloBE")에 따른 추가 법인세("CIT") 적용에 관한 제107/2023/QH15호 결의("제107호 결의")를 공표하였다. 현재 베트남 세무총국은 제107호 결의의 일부 조항을 지침하는 시행령을 작성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의 지침과 제107호 결의에는 국가별보고서(CbCR)에 따른 **전환기간동안 책임면제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 "TCSH")**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는 OECD가 다국적기업 ("MNE")이 글로벌 최저한세("GMT") 적용 초기 몇 년 동안 행정 절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TCSH 원칙은 소득산입규칙("IIR") 및 적격소재국추가세액("QDMTT") 규정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전환 기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는 모든 회계연도("FY")를 포함하되 **2028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되는 FY는 포함하지 않음) 동안, 베트남 또는 다국적 기업이 투자한 다른 국가에서의 **추가세액은** 해당 국가가 Safe Harbour 테스트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0 (zero)**로 간주된다.
 - (i) De Minimis Test (최소 매출 및 소득 기준)
 - (ii) Simplified Effective Tax Rate ("ETR") Test (간소화된 실효세율 기준)
 - (iii) Routine Profit Test (일상적인 이익 기준)
- OECD는 Safe Harbour가 MNE 그룹이 전환 기간동안 GMT의 원칙에 점진적으로 익숙해지도록 돕기 위한 임시 제도라고 소개한다. 따라서 GloBE 규정에 따라 상세하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CbCR 및 구성기업의 별도 재무제표 ("FS"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소스만을 기준으로만 하면 된다. 그러나 OECD의 주석(Commentaries)에서는 "적격"하고 Safe Harbour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 출처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특수 제도와 복잡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딜로이트의 이 전문 자료는 OECD 가이드 라인에 따라 Safe Harbour의 주요 원칙을 이해하고, 제107호 결의 및 곧 발표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첫 회계연도 적용(FY2024)을 위한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MNE 그룹(베트남 외국 투자 MNE 그룹 및 베트남에 구성기업이 있는 외국 MNE 포함)을 돕기 위해 제공된다.

로드맵

Deloitte는 FY 2024의 Safe Harbour 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바로 해야 할 일

FY24 회계 데이터가 제공된 후 해야 할 일

1

초기 평가

- ✓ 데이터베이스 준비 상태 평가 (예: 적격 CbCR, 적격 구성기업의 FS 등)
- ✓ 최신 회계연도 (2023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Safe Harbour 적격성 평가 실시

2

재평가

- ✓ FY 2024의 감사된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격성 재평가
- ✓ 그룹이 투자한 각 국가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선택함

3

계산

- ✓ 적격 CbCR 및 적격 FS에서 관련 데이터 수집
- ✓ 각 테스트에 대해 계산 수행
- ✓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TCSH 적용 평가 및 선택

4

신고

- ✓ TCSH 적용을 선택하여 GloBE 정보 신고서 및 추가 CIT 신고서에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기한 내에 세무당국에 제출함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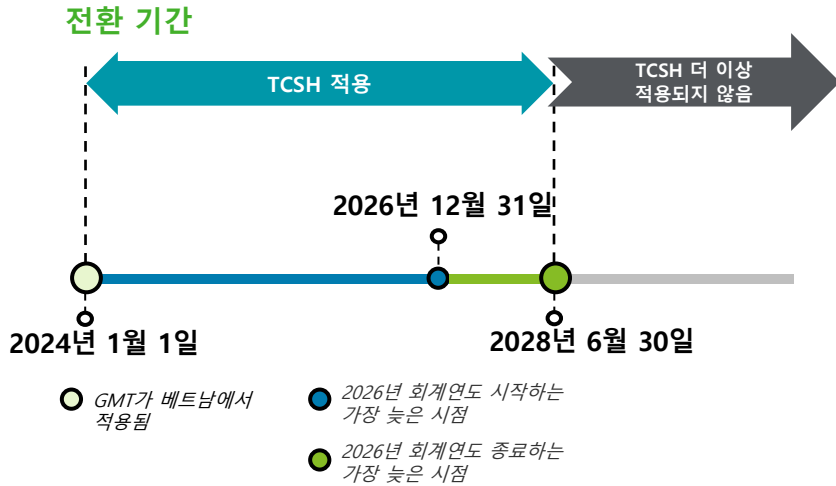
Tax Firm of the Year

I.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원칙 및 적용 기간

개요

- TCSH는 GMT가 발효되는 초기 몇 년 동안 MNE 그룹의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 전환 기간 동안, 적격 CbCR 및 적격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된 세 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의 추가 세액은 **0(제로)**로 간주된다.



“ONCE OUT, ALWAYS OUT” 원칙

전환 기간 동안의 TCSH 규정은 모든 구성기업과 국가 내 고정 사업장에 적용되며, “Once out, always out” 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ONCE OUT, ALWAYS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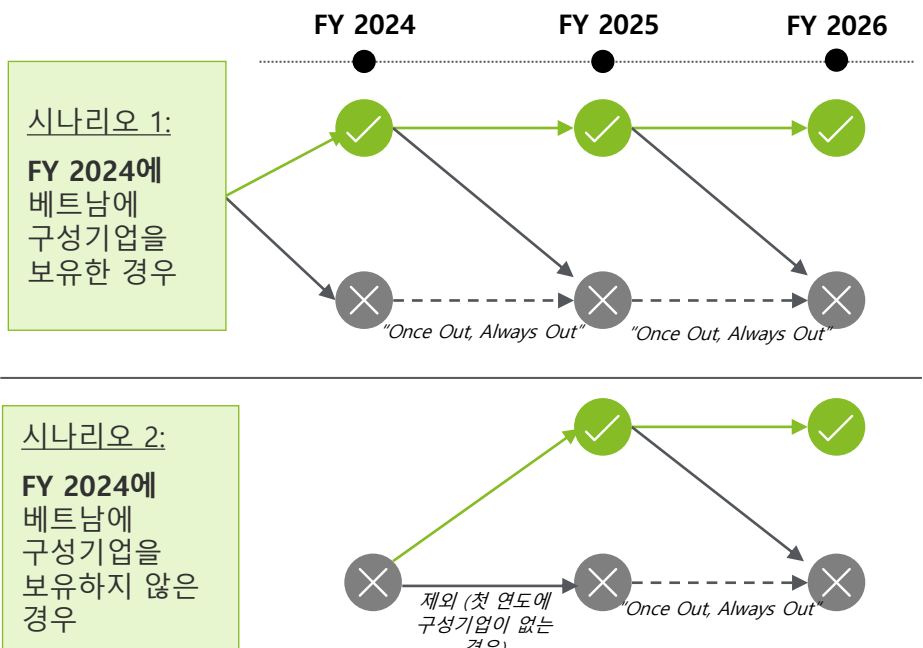
MNE 그룹이 GloBE 규칙이 적용되는 회계연도에 특정 국가에 대해 TCSH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Safe Harbour를 적용 불가능하다. 단, 이전 회계 연도에 그룹 내에 해당 국가에 위치한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정:

- MNE 그룹은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며,
- 2024, 2025, 2026 회계연도에 GloBE 규칙이 적용된다.

TCSH는 베트남의 구성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 TCSH 적용 가능
- ✗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TCSH 적용 불가
- - ✗ 이전 연도에 TCSH 적용되지 않아 적용 불가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I.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TCSH Tests

다음 3 가지 테스트 중 하나가 충족될 때 TCSH가 적용된다:

Tests	조건	데이터 소스	비고
(1) De Minimis Test (최소 매출 및 소득 기준)	(i) EUR 10mil미만의 매출, 및 (ii) EUR 1mil 미만 법인세 차감전 이익 혹은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 CbCR 	De Minimis 테스트는 그룹에 매각 대상 (entity held for sale)이 포함된 경우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및 CbCR에 포함되지 않음), 이러한 기업들의 총 매출액에 그룹의 CbCR에 보고된 총 매출과 합산하여 EUR 10 million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 Simplified ETR Test (간소화된 실효세율 기준)	한 국가의 간소화된 ETR가 최소한 다음과 같다: ✓ 15% for FY24; ✓ 16% for FY25; ✓ 17% for FY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 CbCR 적격 재무제표 ("FS") 	고정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CIT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국가의 고정사업장에 전적으로 배분된다, 및 간소화된 ETR 테스트에는 고정사업장의 위치만 포함될 수 있으며, 본사의 위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3) Routine Profit Test (일상적인 이익 테스트)	세전 이익이 실질기반소득 공제 (SBIE) 금액과 동일하거나 미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 CbCR GloBE 규칙에 따른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SBIE 금액에는 매각 예정 법인 및 GloBE 규칙에 따라 제외된 법인의 급여 및 유형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구성기업이 CbCR과 GloBE에 따라 서로 다른 관할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관할 지역의 급여 및 유형 자산은 양쪽 모두의 SBIE 금액에서 제외되며, Routine Profit Test 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 회계 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관할 지역은 항상 일상적인 이익 테스트 (기준3)를 충족하며 SBIE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적격 CbCR 보고서	적격 재무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격 재무제표 (FS) 를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된 보고서이다. MNE 그룹이 규정에 따라 CbCR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적격 FS에서의 총매출 및 법인세 전 이익 데이터를 사용하여 TCSH를 적용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상위모회사("UPE")의 연결 FS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 재무계정 각 구성기업의 별도 FS는 다음에 따라 작성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 가능한 재무 회계 기준, 혹은 적용이 허용된 재무 회계 기준 및 회계 장부에 기록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다 크기 또는 중요성 기준에 따라 MNE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기업(CE)의 CbCR 작성을 위해 사용된 재무 계정

특별 유의사항:

- 적격 FS는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 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CbCR에서 적격 FS의 데이터를 조정하는 경우, OECD의 주석문서 또는 합의된 행정 지침에 명확히 요청된 조정을 제외하고는 테스트된 관할 지역이 TCSH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구성기업의 재무 계정/별도 FS에서 매입가격 회계(PPA) 조정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한 상황을 제외한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I.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주목할 만한 규칙

주목할 만한 경우

- 합작 투자 및 합작 투자 자회사**
 적격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별도의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으로 적용된다.
- 최상위모회사의 국가는 전환 회사임.**
 최상위 모회사의 모든 소유권을 적격 소유자가 보유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 순 미실현 공정가치 손실**
 한 국가에서 50 mil 유로를 초과할 경우, 법인세 전 이익(손실)에서 제외된다.
- 투자 기업**
 투자 기업은 GloBE 규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투자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와 투자 기업의 소유주가 위치한 국가의 세이프 하브 규정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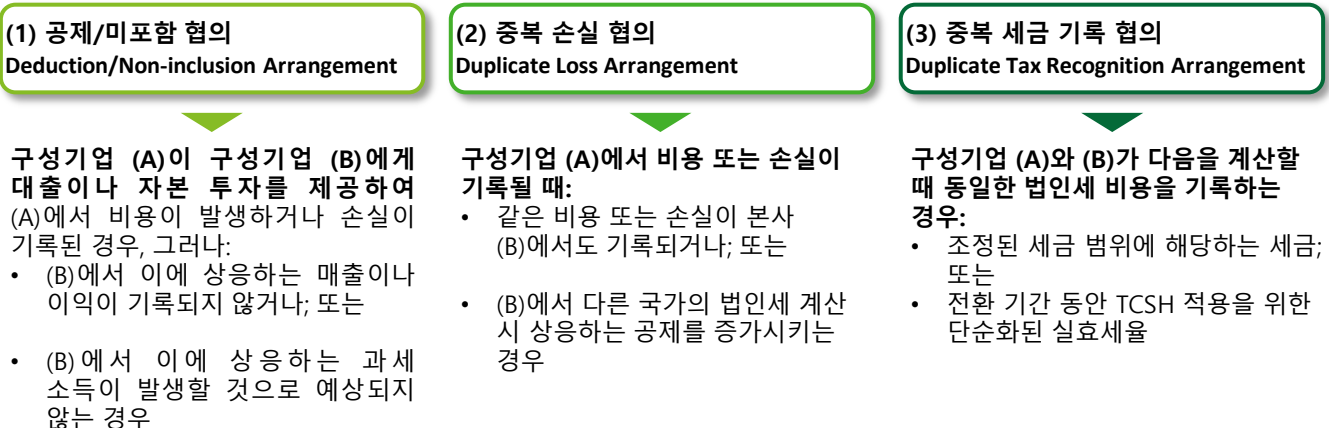
제외 사항

TCSH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음:

1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구성기업
2	다국적 기업 그룹이 여러 모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Multi-Parented MNE) CbCR이 기준에 맞더라도 그룹 전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3	적격 소득 분배에 대한 세금 규정 (Eligible Distribution Tax System)의 적용을 선택한 구성기업이 있는 관할 지역
4	이전 연도의 전환 기간 동안 TCSH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관할 지역 ("Once out, always out")

하이브리드 차익 거래 구조에 따른 조정

- 2022년 12월 15일 이후에 그룹 내부에서 하이브리드 차익 거래 구조(Hybrid Arbitrage Arrangement)가 실행된 경우, 세전 이익과 법인세 비용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
- 하이브리드 차익 거래 구조의 유형과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의 합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을 테스트된 관할 지역의 세전 이익에서 제외한다.

위의 합의로 인해 발생한 세금 비용을 해당 국가의 법인세 비용에서 제외한다.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II. Permanent Safe Harbour



Permanent Safe Harbour (간소화된 계산 Safe Harbour)

OECD의 지침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 그룹이 전환 기간 동안 safe harbour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Permanent Safe Harbour의 자격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룹은 간소화된 계산을 통해 특정 국가의 추가 세금이 0(제로)으로 간주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Permanent Safe Harbour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은 OECD에서 완전히 안내되지 않았다. 현재의 기본 지침은 아래와 같다.

Permanent Safe Harbour 개요

- **Permanent Safe Harbour**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에 대한 추가 세액 (해당 연도에 대한 조정된 추가 세액 제외)은 다음 3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0(영)으로 간주된다.
 - (1) 일상적인 이익 기준 (Routine Profits Test)
 - (2) 최소 매출 및 소득 기준 (De Minimis Test)
 - (3) 실효세율 기준 (ETR Test)
- 구성기업은 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간소화된 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간소화된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OECD의 향후 문서에서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다.

중요하지 않은 구성기업

중요하지 않은 구성기업의 경우 간소화된 계산 방법을 적용할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신고 구성기업은 간소화된 계산을 사용하여 중요하지 않은 구성기업의 조정된 소득 또는 손실과 적용 범위 내 세금을 판단하기 위한 연간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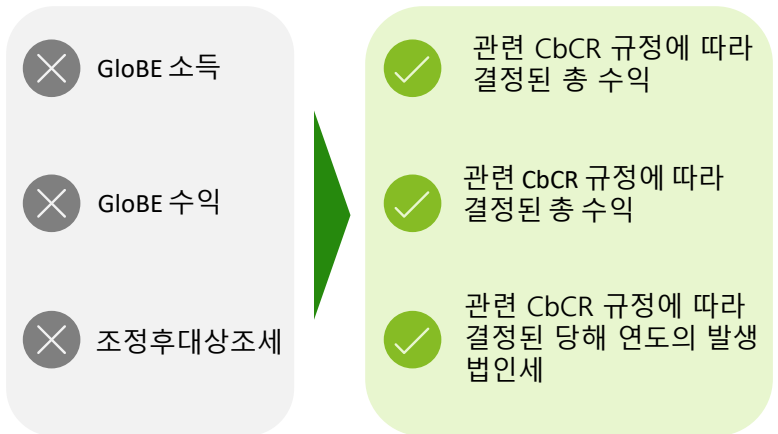
정의:

규모나 중요성에 근거하여 최상위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연결되지 않은 고정사업장("PE")를 포함한 엔티티를 말한다. 이에 따라:

- ✓ GloBE 규정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
- ✓ 독립적으로 감사된 연결 재무제표
- ✓ CbCR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재무 계정은 허용되거나 승인된 재무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해당 기업의 수익이 5mil EUR를 초과하는 경우)

중요하지 않은 구성기업에 대한 간소화 계산 방법 적용:

GloBE 규정 대신 관련 CbCR 규정의 기준을 사용하여 safe harbour 자격을 결정한다.



CbCR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최상위모회사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CbCR 작성 규정, 또는
- 최상위모회사를 대신하여 CbCR을 제출하는 국가의 CbCR 작성 규정, 또는
- OECD BEPS 패키지의 CbCR 제13호 보고서 및 CbCR 작성 가이드라인, 만약 최상위모회사 국가에 CbCR 규정이 없거나 다국적 기업이 어느 국가에서도 CbCR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purposes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Contact Us



Bui Tuan Minh
National Tax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Pham Thi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이상근 부대표
KSG Leader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